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05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최보윤·서천호·김미애

정성국 · 김선교 · 박수영

김상훈 · 한지아 · 최수진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를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화면해설, 폐쇄자막"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
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국	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문화유산 <u>및</u>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u>시</u> ,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수 있도록 점자표시, 화면해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	폐쇄자막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